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1999. 4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가. 제안이유

- 관내 오정구 삼정동 37-3번지상에 현재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고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건설(건축)폐재류를 파쇄기로 처리하여 폐자재를 재활용함으로써
-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
-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: 중간처리시설)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7-3번지상(주)협창환경 대표 임태방으로부터 시설면적 9,748㎡(약 2,948평) 부지에 대해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청이 있어
- 금회 동부지를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: 중간처리시설)로 결정·설치하여 관내 지역을 비롯 경기도 일원에서 수집된 각종 건설폐기물을 파쇄기로 분쇄하여 골재대용품을 생산,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오정구 삼정동 37-3번지에는 현재 무엇이 위치하고 있는지?	○ (주)협창환경이 건설폐재류 수집, 운반업을 하고 있음.
○ 동부지를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?	○ 관내는 물론 경기도 일원의 건설폐기물을 수집 후 파쇄기로 분쇄하여 골재대용품을 생산, 재활용하여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.
○ (주)협창환경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지?	○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.

- 4. 토론요지
 - 가. 찬성토론
 - 없음
 - 나. 반대토론
 - 없음
- 5. 심사결과
 - 반대의견서 채택
- 6. 소수의견요지
 -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음
- 8. 첨부서류
 - 의견서 1부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안의견서

의안번호	150	안건명	부천시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안
제 출 자	부천시장	의결년월일	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(1999. 4. 12)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안에 대한 의견

오정구 삼정동 37-3번지를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로 결정하여 건설(건축)폐제류를 재활용하여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동지역은 인근지역에 위생시설인 축산물 공판장과 대한항공정비공장 등 중소규모 공장 및 오정대로가 통과하므로 시민건강관리와 주변 교통체증, 미세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하여 기업체 및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바 동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.

1999년 4월 12일

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부천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안

의안번호	제 150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사유

- 관내 오정구 삼정동 37-3번지상에 현재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고 있으나,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재 활용 차원에서 건설(건축)폐재류를 파쇄기로 처리하여 폐자재를 재활용함으로써
-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
-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 : 중간처리시설)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듣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7-3번지상에 (주)협창환경 대표 임태방으로부터 시설 면적 9,748㎡(약 2,948평) 부지에 대해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청이 있어
- 금회 동부지를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 : 중간처리시설)로 결정·설치하여 관내지역을 비롯 경기도 일원에서 수집된 각종 건설폐기물을 파쇄기로 분쇄하여 골재대용품을 생산,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.

관련근거

-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2호

부천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결정안

폐기물처리시설(중간처리시설)결정조서

구 분	시 설 명	세 부 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비고
신설	폐기물처리시설	중간처리시설 (건설폐기물 처리시설)	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7-3번지	9,748	

결정사유

- 현위치에서 폐기물처리업(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)을 허가받아 사업 중이나 현재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형식에서 탈피,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을 원자재 그대로 파

폐기를 이용 처리하여 재활용 자재 및 골재 대응품을 생산, 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함.

- 또한 단순 매립처리에서 벗어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참고사항

- 도시계획 용도지역·지구 : 생산녹지지역, 최고고도지구
- 지적법상 지목 : 공장용지
- 파쇄기 및 소각시설 처리능력
 - 파쇄기 : 120톤/일
 - 소각시설 : 100kg/Hr
- 토지이용계획(안)

(단위 : m²)

면적	야적장·기타	주차장	녹지	비고
9,748	8,260	160	1,328	

- 주변여건 : 인근 지역에 위생시설인 축산물공판장(도살장, 판매시설)과 대한항공 정비공장을 비롯 중소규모의 공장이 입지해 있음.
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: 99. 2. 26(부천시장)
- 영업구역 : 경기도 전역

위치도

